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등의 생리용품 지원 의무〉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3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2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4

I .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4. 15.

(3) 회 부 일 : 2026. 4.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건강의 보호·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3항 신설).

- 개정안은 이 중 생리용품 지원 의무를 특정하여 신설하면서 그 지원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라는 점에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²⁾ 구체적인 용품을 특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³⁾에서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생리용품 지원과 같은 복지사업은 개정안과 같이 특정 용품을 법률에서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예산 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 생리용품 지원 예산사업 현황 >

1) (성평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2231-312)

- 사업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생리용품 구입비(바우처) 지원(年 16.8만원)
- 소요예산: 총 337억원(국비 160.4억원/지방비 176.6억원) * 사업운영비 별도

- 2)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1231-320)

- 사업명: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26년 하반기 신규 시행)
- 지원대상: 10여 개 시범지역(기초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지급기)를 상시 비치하여,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쉽게 공공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소요예산: 3,214백만원(국비 100%)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 여성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특정 물품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기본법보다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2) 행정안전부 (수정수용)

- ☐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등 지원 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의 지자체 예산 지원 의무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3) 교육부 (수정수용)

- ☐ 모든 여성에게 일괄 지급하기보다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4) 기획예산처 (신중검토)

- ☐ 개정안은 재정지원 필요성, 국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일률적인 지원 의무화 규정은 수용이 곤란함.

문 의 처
02)6788-5494